

여비 규정

제정 2021. 06. 09.

개정 2021. 12. 21.

개정 2023. 1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본회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철도·선박·항공기·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2. 21.)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5조(여비일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1.)

② 삭제 (2021. 12. 21.)

제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출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그 외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운전원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남양주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다만, 출장지역이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출장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버스, 택시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관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제7조(여비의 정액) ①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2021. 12. 21.)

③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④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비정액 중 운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 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국외여비) 국외여행시의 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기준표와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4"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의 관계) ① 휴일 또는 토요일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여비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선수 및 임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전 근무명령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참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21.)

제12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1. 12. 21.)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21.)

제13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2. 21.)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제14조(철도운임의 지급)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같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21.)

제15조(선박운임의 지급)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1. 12. 21.)

제16조(항공운임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신설 2023. 1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3. 11. 23.)

국내여비 기준표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관련)

구 분	공무원 여비규정	운 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박당)	식 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임원 (전무, 국장 포함)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25,000원
과장 이하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상한액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기타지역 70,000원)	25,000원

[비 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2등석 정액으로 한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2] (개정 2023. 11. 23.)

국외여비 기준표 (제8조 관련)

구 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비 고
임원 (전무, 국장 포함)	제3호	
과장 이하	제5호	

[별표3] (개정 2023. 11. 23.)

국외여비 지급표 (제8조 관련)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제3호	가	40	실비(상한액 :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 162)	72
	라	40	실비(상한액 : 108)	61
제5호	가	30	실비(상한액 :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 81)	37

[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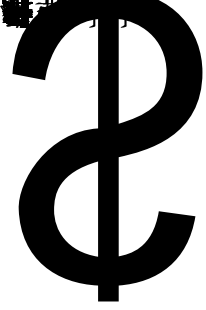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와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폴란드, 루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리아

럽

- 3) , 유, 유 베, , .

, , 오 과 . ,

[별표4]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제9조 관련)

해당자	지급기준	비고
1.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임·직원의 여비지급 등급	
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지급 등급을 준용한다.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가. 임원: 제4호의 여비 지급등급 나.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 제5호의 여비 지급등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직원: 제6호의 여비 지급등급	
4.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 등급	
5. 기타 임·직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임·직원의 직위 및 당해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지급 등급	